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교육경비 보조지원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여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학교교육지원 등 교육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별 지원액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
 -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예산의 범위 내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상한 범위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임.

○ 검토 결과,

- 우리시에서는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며 교육청, 경상북도와 함께 내년 고3 급식비 지원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유치원 급식비도 연차적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조례상의 교육경비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규모도 점차 확대하는 추세임.

- 우리시는 현행 조례상 교육경비보조금을 시세(세외수입제외) 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고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비율의 상한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공교육 활성화 및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